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1. 18 선고 2020가합22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 162,378,380원, 선정자 G에게 252,790,194원, 선정자 H에게 224,458,311원, 선정자 I에게 149,638,874원, 선정자 J에게 149,638,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. 5. 21.부터 2013. 4. 25.까지 연 5%, 2013. 4. 26.부터 2015. 5. 31.까지 연 20%, 2015. 6. 1.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재판장판사김세용

판사양진호

판사최파라

별지